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7.12.11(월) / 총2매(본문2)
담당부서 건설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병훈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허동혁 • ☎ (044) 201-3542, 3543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사고(12.9) 후속조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'**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**'을 **보완**하고, **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**에 대해 **엄중 조치**할 계획입니다.

□ 또한,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, 전국 건설현장에서 **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**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**일제점검을 12월말까지 실시**할 예정이며,

○ 노조, 임대사단체, 건설협회, 검사기관 등 **관계기관과 12월 15일 합동회의를 실시**하여, **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**을 듣고, 건설현장의 **안전 확보를 최우선**으로 두고, **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**해줄 것을 **당부**할 계획입니다.

□ 아울러 지난 **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**을 **차질 없이 추진**하고,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**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** 했습니다.

○ 현재 **2,117대에 대한 연식조사**를 완료하였고, 허위로 확인된 **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**을 하였으며,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**금번 사고 크레인 제작사**(프랑스 포테인사)에 대해서도 **연식 확인을 요청**하였습니다.

○ 6개 **타워크레인 검사기관** 중 **5개 기관***에 대한 **암행점검**을 실시하여 검사기한 초과,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.

*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 한국승강기안전공단, 대한산업안전협회, 한국안전기술협회, 한국산업안전

○ **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, 허위등록 근절, 검사내실화** 등 건설기계관리법 **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**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2월 중 입법예고 후,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

○ **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, 주요 부품인증제, 중요 부품 내구연한 규제**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,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, **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**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.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조태영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